

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4- 호

## 201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
201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12. 31.

강 남 구 청 장

1. 건 명 : 201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2. 결정항목

가. 차 량

①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방법 ⑤ 산출예시

나. 기계장비

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연도별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⑥산출예시

다. 선 박

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

라. 항 공 기

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

마. 시 설 물

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

바. 부수시설물

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

사. 입 목

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시가표준액 ⑥과표적용방법

아.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

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시가표준액

자. 골프연습장

①용어정의 ②내용연수 및 잔가율 ③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④적용요령

3. 세부결정사항

강남구 세무관리과, 세무1과, 세무2과 및 각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고 있는  
2015년도 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

4. 시행일

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